

## ●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-42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25일

광주전파관리소장

###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

1. 법적근거: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
2. 법령위반사항: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
3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4. 청문일자(의견제출기한): 2023. 6. 26.(월) 09:00 ~ 10:00
5. 청문(의견제출)장소: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
6. 처분대상

허가번호	무선국명	호출명칭 (부호)	시설자명	주소
41-2015-30-0000463	대양호	632대양호	정*홍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

#### 7. 유의사항

- 가. 의견제출 방법: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망(전자우편, 팩스 등), 우편,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만약 청문일(의견제출 기한)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☎ 062-383-5070
  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☎ 061-242-0014
  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☎ 061-641-5500
- 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(☎ 061-330-6867, FAX 061-330-683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